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6. 23 선고 2019가단80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 고 A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아(유한) 담당변호사 방경희

변론 종결 2020. 6. 9

판결 선고 2020. 6. 2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 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7. 20. 피고와 사이에, 용인시 수지구 C 지상 제1층 D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를 분양받거나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등기하는 내용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매수자금으로 2003. 7. 30. 5,000만 원, 2003. 7. 31. 5,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2005. 1. 5. E과 사이에,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1억 원과 이 사건 상가를 담보로 대출받은 2억 2,000만 원, 합계 3억 2,000만 원을 매매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5. 1. 6.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상가를 F에게 매매대금 3억 7,000만 원에 매도하여 2015. 12. 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인 2003. 7. 20.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계약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한 뒤, 명의수탁자인 피고가 소유자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상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부당이득하였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판결 참조).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계약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수자금이 제공된 시점에 이미 발생 및 확정되어 그때부터 부당이득 반환청구 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2003. 7. 30. 및 2003. 7. 31. 매수자금을 제공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난 2019. 12. 11.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매수자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항변은 이유있다[피고가 위 계약명의신탁약정 체결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의 매각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역시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라고 정하는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1항에 좇아 무효이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30483판결 참조)].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 유지상